

달라진 공정거래법령 내용 해설

—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 —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이번 제5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및 동법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법령 운용과정에서 지적되었던 거의 모든 쟁점사항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법령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졌다.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를 보다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기업결합(M&A)의 활성화, 금융업분야의 진입장벽 완화 및 자본·금융시장의 개방 등 경제자유화 조치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제도의 국제적 논의, 즉 「경쟁라운드」(CR)에 대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내 대응태세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그 밖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제고와 공정거래사건의 증가 등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제 각 부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과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보완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1.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새로운 경제규제의

도입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기존의 경제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도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가. 경제규제의 완화

정부의 경쟁제한적 제도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법령제정·처분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쟁제한 사항의 내용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새로운 경제규제 도입의 억제뿐 아니라 기존의 경제규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쟁제한 사항의 내용을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사전협의 또는 통보대상을 '법령, 예규·고시, 승인 등의 처분'으로 규정하였다(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등) 개정).

또한, 각 부처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개정하거나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령, 고시·예규, 승인 등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등)④ 신설).

나. 금융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금융사업자와 보험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동안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던 것을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법 제61조(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삭제).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제외,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등 예외를 계속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조항에서 개별적으로 예외인정토록 하였다(법 제2조(정의) 제7호단서 신설,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① 개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① 개정).

또한, 시행령 제11조(기업결합의 제한대상) 단서를 삭제하면서 정부투자기관도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도록 하였다(영 제11조(기업결합의 제한대상) 삭제).

2. 독과점 시책의 보완

대부분의 독과점 시장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개선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진입제한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남용행위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함)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선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신설).

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종래의 '최근 1년간의 국내총공급액이 500억원 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서 '최근 1년간 국내에 공급된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개정하였다(영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등]개정).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 있어 시장개

방·시장진입 및 과거행태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지배력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으로 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당해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자유로우며, 최근 2년동안 실질적인 가격인상을 한 사실이 없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등] 단서 신설 및 영 제7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제2항 개정).

3.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보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보증한도를 인하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부당내부거래 및 탈법행위 관련규정을 보완 또는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친족독립경영회사를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채무보증관계·자금임차관계 및 거래관계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 및 소유분산

우량회사에 대한 지정기준을 보완하였다.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범위 조정

정부의 「업종전문화유도시책」 폐지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요건에 해당하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던 '주력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을 삭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유지를 위한 출자인 경우에 인정하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의 범위를 당해 중소기업 지분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하였다(영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 개정).

나. 채무보증한도의 인하

편중여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계 계열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1993년 4월 1일 도입·시행하고 있는 채무보증제한 제도(채무보증한도 : 자기자본의 200%)의 경과기간(3년)이 1996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단계로써 채무보증의 한도를 100%로 낮추고 98년 3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경과기간으로 설정하였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개정 및 부칙③).

다. 부당내부거래행위 유형의 규정

그 동안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만 부당내부거래로 보던 것을 확대하여,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까지 부당내부거래로 보아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신설).

라. 탈법행위 관련규정의 구체화

탈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기업결합 및 경쟁력집중 억제시책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영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신설)가 내부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업결합의 방법을 통해 시장지배력(시장점유율 1위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에 해당,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25/100이상일 것)을 갖거나 중소기업시장(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2/3이상인 거래분야)에 진출하여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행위 또는 대규모로 수요하는 상품·용역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 ②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지주회사로 활용하는 행위,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등을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다(영 제21조의3[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신설).

마. 기업집단의 친인척에 대한 「독립경영인정기준」의 신설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동일

인의 친족이 당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용되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문 규정한 것으로 동일인의 친족인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되어 자유롭게 자기의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영은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가 다음의 요건("독립경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과 독립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보아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신설).

- ①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주식지분이 3%(비상장법인의 경우 10%)미만일 것
- ②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측계열회사")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의 관련자 지분의 합이 3%미만(비상장법인의 경우 15%)일 것
- ③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겸임이 없을 것
- ④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
- ⑤ 최근 1년간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매출 또는 매입의존도가 50%미만일 것
- ⑥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이 작성한 친족측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바. 소유분산시책 운용

자산총액 순위 3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으로서 주식의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하여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기준을 보완하였다(영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 제1항 개정).

●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의 지정기준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강화
:10% 미만 → 5% 미만
- 계열회사를 포함한 전체지분을 완화
:20% 미만 → 25% 미만

●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기준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강화
:8% 미만 → 5% 미만
- 계열회사를 포함한 전체지분을 완화
:15% 미만 → 20% 미만
-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조정
- '주력기업이 아닐 것'이라는 현재의 요건을 삭제

또한,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각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및 재무구조현황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소속 회사 전체를 결합한 재무제표등 재무현황과 거래내역을

나타내는 서류(“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영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제2항 및 제3항 개정), 소유분산우량회사로 확인 받고자 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재무구조현황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영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 제2항 개정).

개정된 영 시행당시 이미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회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보며,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부칙 제4조). 그러나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영 부칙 제2조)은 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기업결합 제한제도의 보완

최근 세계적인 M&A활성화 추세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심사제도를 대폭 보완하였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제한대상을 일정규모(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확대(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개정 및 영 제11조(기업결합의 제한) 삭제) 하되, 신고의무는 완화하여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200억원 이상의 회사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하였다. 또한, 상장법인에 대한 신고대상 주식소유 비율을 인하(20% → 15%)하고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

하도록 하였다(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개정 및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개정).

독과점 시장의 형성과 경제력집중의 원인이 되는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가 시장지배력(시장점유율 1위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에 해당.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25/100이상일 것)을 갖거나,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중소기업시장(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2/3이상인 거래분야)에 진출하여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4항 신설). 한편 기업결합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종래의 친족 및 계열회사 외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하였다(영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호 신설).

5.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강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자진 신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법 제22조의2(신고자에 대한 면책) 신설),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지금까지 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행위를 직접하거나 교사하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하던 것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제한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였다(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4호 개정).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래 고시로 운영하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6.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의 보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 중 무체재산권계약을 산업재산권도입계약, 저작권도입계약 및 노우하우도입계약으로 세분하고, 프랜차이즈 도입계약과 공동연구개발협정을 심사대상에 추가하였다. 산업재산권 도입계약의 경우에서 현재 3년이상 계약에서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였으며, 저작권 도입계약에 서적·영상·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을 포함하였다(영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개정).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의 심사요청 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였다(영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2항 개정).

7. 법 집행제도의 보완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부과 및 고발조항을 대폭 보완하는 한편,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였다.

가. 과징금 부과

법인 신설 등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5~1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액제를 도입하였으며, 과징금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을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평균매출액으로 규정하였다(영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항 개정).

매출액 개념 대신 "영업수익"의 개념을 사용하는 사업자(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 (예)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며(법 제6조[과징금] 본문 개정), 사업자가 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각 과징금부과 조항에서 정한 정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조[과징금]·법 제22조[과징금]·법 제24조의2[과징금]·법 제28조[과징금] 제2항·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개정, 영 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신설).

과징금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장을 신설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참작할 사항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법 제10조의2[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및 영 제11장[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재난, 경영악화, 일시적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법 제55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영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및 영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연 6%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영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은 국제기본법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였다(영 제64조(담보의 종류·평가등)).

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속고발권관련 조항에 추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양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법 제71조(고발)).

다. 집행정지제도의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

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및 영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신설).

또한, 그동안 기존 법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민사상의 소마저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문제가 있어, 이 규정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종래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법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개정).

8.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운영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경쟁정책의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임과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정부조직법상의 정부위원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법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2항 개정 및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제4항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의 구분 및 심판정 질서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회의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일상적인 사건

과 경미한 사건은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비상임위원 2명을 증원하였다(법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신설, 영 제49조[소회의의 구성] 내지 제5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신설). 또한,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채택되는 위원의 요건을 강화하였다(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및 영 제51조[위원의 기피·회피] 신설).

또한,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이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질서유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2항 신설).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신·구 조문 주요내용 비교표

1. 공정거래법

항 목	종 전	개 정
1. 경쟁제한적 법령·처분 협의 제도(법 제6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에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명령·처분·승인시 공정위와 미리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과 승인·처분등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예규·고시는 공정위에 사전통보 ● 기존 경쟁제한적 법령·처분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시책 마련(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등 거래행태 시정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시장에 대하여 경쟁도입 등의 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제도(법 제10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자기 자본의200%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로 축소 (※원전 해소 일정은 차기 법 개정시 제시)
4. 자금·자산 관련 부당내부거래 규제(법 제 23조 제 1항 제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간 상품·용역 부문의 부당내부 거래만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자산·인력부문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도 규제대상에 추가 ● 계열회사만을 차별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항 목	종 전	개 정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개선, (법 제7조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법 제7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 금융기관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20% 이상 주식취득시 신고의무 부과 ● 혼합결합 등에 대한 경쟁제한성 추정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 ● 금융기관도 기업결합 심사 및 금지대상에 포함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식취득비율을 15%로 하향조정 ●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진출시 결합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경우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6. 탈법행위 규제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법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만 있음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7.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법 제2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신설)
8.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3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위원회 고시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별표)
9. 공정위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법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를 예산·인사·교육훈련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고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를 정부조직법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정부위원으로 규정
10. 위원회 운영개선 (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간건은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모두 처리 ● 비상임위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회의를 「전문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고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서 처리토록 함 ● 소회의 운영을 위해 비상임위원을 4명으로 증원
11. 이의신청시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도(법 제5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이의신청을 해도시정조치는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이행시 이의신청사업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
12.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법 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계속 유지 ●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과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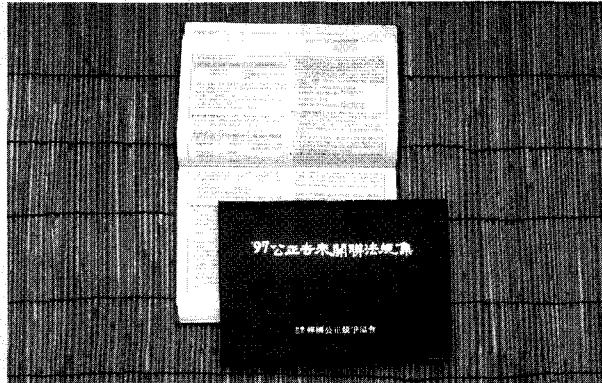
항 목	종 전	개 정
1. 친족의 계열분리 요건(영 제3조의2) ● 상호주식 보유	〈내부지침으로 규정〉 ● 상장·비상장사 구분없이 합계 3% 미만	〈시행령으로 규정〉 ●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15% 로 완화 ● 매출·매입거래 의존도 50% 미만(신설) ● 증권위가 지명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친족측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신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범위 (영 제4조) ● 지정품목의 금액기준	● 국내총공급액이 연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 연간 1,000억원 이상인 시장에서의 사업자 ● 독과점력의 남용우려가 없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신설)
3. 기업결합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11조)	● 친족 및 계열회사	● 친족 및 계열회사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 업결합에 참여하는 자(신설)
4.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영 제17조)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 계열회사를 포함한 전체지분율	● 10% 미만 ● 20% 미만	● 5% 미만 ● 25% 미만 ● 기업집단결합제재무표 등 제출(신설)
5.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영 제17조의2)	● 당해 중소기업 지분의 10% 이내	● 20% 이내 ●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도 20% 이내에서 예외인정(신설)
6. 소유분산우량 회사의 지정기준 (영 제17조의4)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 계열회사 포함전체지분율 ● 자기자본비율	● 8% 미만 ● 15% 미만 ● 20% 이상	● 5% 미만 ● 25% 미만 ● 25% 이상 ● 증권위가 지명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 서 제출(신설)
7. 기업결합 신고대상(영 제18조)	●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자 산총액 200억원 이상 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회사
8. 경제력집중억제 관련규정에 대한 탈 법행위유형 및 기준(영 제21조의3)	(구체적 기준없음)	● 대규모회사가 기업내부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 업결합외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분야나, 대규 모로 수요하는 상품·용역의 생산에 참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신설)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주식 소유를 통해 지 주 회사로 활동하는 행위(신설)

항 목	종 전	개 정
9.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기준(영 제35조) (근거규정 없음)	(근거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신고하여 증거 제공과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 과징금 등 시정조치 감면(신설)
10. 자금·자산·인력분야의 부당 지원행위 기준 (영 제36조)	(근거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부동산·유가증권·인력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신설)
11. 자율심사 요청 국제계약의 범위 (영 제47조)	3년 이상의 산업 재산권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산업재산권 계약 ● 프랜차이즈계약, 공동연구개발협정 (신설)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본 협회는 지난 4월 15일 각종 공정거래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약관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관련된 기타 법령과 중요한 공정거래 용어의 해설도 수록하였다.



또한 부록편에는 공정거래제도의 변천연혁과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대상 및 과징금제도,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의 판매가는 30,000원입니다. 구입신청 및 문의는 전화 775-8870~2(조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